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79호 2012. 3. 12.(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1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2호(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25호(도로명주소 고시) 6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26호(도로명주소 고시) 7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07호(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207호(공동주택 공사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9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규칙	☐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 계약사무 통합 방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 입찰·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는 통합발주를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전문화·투명화·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계약사무 통합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관한 사항(제50조) -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제59조의2)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제77조) -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12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12.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는 구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59조의2 후단을 삭제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지원사업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이 아닌 배치고사 성적을 적용함으로써 중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사이의 선발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명 정비 -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선발 기준 개정 (제4조) - 현행 : 장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학업성적은 가장 최근의 학기말성적으로 하며 신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 직전 최종 학기의 성적 또는 배치고사 성적을 준용 - 개정 : 장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학업성적은 직전 학기에 이수한 학업성적으로 함. 단,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배치고사 성적으로 함.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3. 12.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장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학업성적은 직전 학기에 이수한 학업성적으로 한다.
단,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배치고사 성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17, 99-2, 100-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공부에 주소등록을 위한 준공전 부여	2009-12-09	청량산에 약수터가 많아 위치성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3. 1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0-8, 174-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4	신축	2009-07-09	독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 ~ 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 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 및 세무과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군·구 세무과
- 제출방법 : 시 및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군·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2. 3.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2년 4월 24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12년 4월 24일 ~ 4월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2012. 3. 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